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569
결재일자	2015.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의회협력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박정민	홍지현	홍동석	10/27 손정수
협 조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결과 보고

2015. 10.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결과 보고

I. 개 요

- 본 회 의 - 제1차 : 2015. 10. 07(수) 개최식
 - 제2차 : 2015. 10. 15(목) 안전처리 및 산회(폐회)
- 상임위원회 일정 : 2015. 10. 08(목) ~ 10. 14(수) 【7일간】

II. 안전 처리결과 현황(제7대)

안전현황

구 분	계		상정안전		의원발의		비 고
	제237회	누 계	제237회	누 계	제237회	누 계	
운영위원회	-	6	-	-	-	6	
보건복지위원회	8	23	3	11	5	12	
도시건설위원회	7	29	-	17	7	12	
행정기획위원회	12	54	1	41	11	13	
계	27	112	4	69	23	43	

위원회별 처리현황

구 분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부결	
	제237회	누 계	제237회	누 계	제237회	누 계	제237회	누 계
운영위원회	-	6	-	6	-	-	-	-
보건복지위원회	8	23	3	13	5	10	-	-
도시건설위원회	7	29	3	19	4	10	-	-
행정기획위원회	12	54	9	43	3	11	-	-
계	27	112	15	81	12	31	-	-

□ 본 회의 처리 현황

구 분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부결	
		제237회	누계	제237회	누계	제237회	누계	제237회	누계
조 례	제 정	4	17	1	10	3	7	-	-
	개정(폐지)	23	63	14	44	9	19	-	-
의견(동의)청취		-	14	-	13	-	1	-	-
예·결산(승인)안		-	5	-	2	1	3	-	-
기타(공유재산, 결의안 등)		-	13	-	12	-	1	-	-
계		27	112	15	81	12	31	0	0

Ⅲ. 처리내용

심사안건(주요내용)	주관과	위원회명
◇ 보건복지위원회(8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 최근 어르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가 “어르신행복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	어르신복지과 의안번호103	수정가결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우선적 고려를 규정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어르신복지과 의안번호104	원안가결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어 시행(15.8.4.)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는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여성가족과 의안번호105	수정가결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인정 및 보상체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국민의 자원봉사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복지정책과 의안번호107	수정가결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정책과 의안번호108	원안가결

심사안건(주요내용)	주관과	위원회명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복지정책과 의안번호109	수정가결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음주청정지역을 확대하고자 함.	건강정책과 의안번호110	수정가결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의안번호111	원안가결
◇ 도시건설위원회(7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택법」제43조제8항을 「주택법」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성북구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의 인용구를 변경하고자 함.	주택관리과 의안번호112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택법시행령」제67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관리과 의안번호113	수정가결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기에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에 정확한 법령 해석을 위한 용어 등을 정비하며,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소음관리인 임명 등의 조항을 보완·신설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환경과 의안번호114	원안가결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함.	환경과 의안번호115	수정가결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교통행정과 의안번호116	수정가결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 안전관리 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위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전치수과 의안번호117	수정가결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관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환경과 의안번호118	원안가결

심사안건(주요내용)	주관과	위원회명
<p>◇ 행정기획위원회(12건)</p>		
<p>1.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p> <p>-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시행 2016.1.1.)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개인정보의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 됨에 따라 조례에서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의 단순 개정 등을 추진하고자 함.</p>	<p>기획예산과 의안번호106</p>	<p>원안가결</p>
<p>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협의체 외에 주민을 포함시켜 폭넓게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선정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며, 위탁관리 및 운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위탁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p>	<p>마을담당관 의안번호119</p>	<p>수정가결</p>
<p>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 <p>-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규정 등에 대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p>	<p>감사담당관 의안번호120</p>	<p>원안가결</p>
<p>4.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근거 법령의 변경 및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일부 수정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함.</p>	<p>기획예산과 의안번호121</p>	<p>원안가결</p>
<p>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 및 공정무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p>	<p>사회적경제과 의안번호122</p>	<p>수정가결</p>
<p>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규정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를 적용하고자 함.</p>	<p>사회적경제과 의안번호123</p>	<p>원안가결</p>
<p>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공유단체 및 공유업자등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p>	<p>사회적경제과 의안번호124</p>	<p>수정가결</p>
<p>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p>	<p>사회적경제과 의안번호125</p>	<p>원안가결</p>
<p>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2013년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조항을 삭제하여 이중지급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후생시설로 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민편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내식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p>	<p>행정지원과 의안번호126</p>	<p>원안가결</p>
<p>10.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재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함.</p>	<p>행정지원과 의안번호127</p>	<p>원안가결</p>
<p>1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p> <p>- 2011. 5. 23자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가 삭제되어 고용직 공무원 임용여부를 검토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p>	<p>행정지원과 의안번호128</p>	<p>원안가결</p>
<p>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p>	<p>자치행정과 의안번호129</p>	<p>원안가결</p>

□ 수정가결(의견채택)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 ⇒ **어르신복지과**
 - 수정내용 : 안 제12조 1항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1항 중“15인”을 “11인”으로 수정하며, 또한 18조3항을 신설하고 기존안 3항을 4항으로 변경과 동시에 내용을 수정(신구 대조표 참조)하고 4항을 5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9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함.
 - 수정이유 : 상위법 규정을 상세적으로 표현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현행화하며, 위촉직의 조건을 상세화하였고 위원의 임기에 제한규정을 두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여성가족과**
 - 수정내용 : 안 제4조 중“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을“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수정
 - 수정이유 : 대부분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선택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정책과**
 - 수정내용 : 안 제9조 4항 중“소장”을“센터장”으로 수정
 - 수정이유 : 기관의 명칭에 통일을 기하고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정책과**
 - 수정내용 : 안 제7조 3항 중“교육문화복지국장”을“해당 소관국장”으로 수정
 - 수정이유 : 조직 개편으로 인해 직위명이 바뀌더라도 그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강정책과**
 - 수정내용 : 안 제3조 1항3호 중“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및 철도역사 등 공공장소”를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으로 수정
 - 수정이유 : 성북구에는 철도역사가 없는바 현실에 맞게 철도역사를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공공장소를 삭제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택관리과

- 수정내용

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변경함. (제4조제1항)

나. 위원회 심의위원 중 공무원의 범위를 “성북구 공동주택 관련 담당공무원” 에서 “성북구 소속 공무원” 로 확대 변경함. (제4조제1항제1호)

다. 위원의 위촉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판사·검사”를 포함하도록 함. (제4조제1항제3호)

라. 부위원장 호선 범위를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로 확대함. (제4조제2항)

마. 장기연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등의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의 임기연임 규정을 한차례로 제한함. (제4조 제3항)

- 수정이유 : 「주택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함에 있어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부위원장 호선 대상 확대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환경과

- 수정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중복되는 단어 “녹색제품” 을 “제품” 으로 수정함 (안 제2조)

나. 조문 중 모호한 용어인 “대제품목” 을 “대상품목” 으로 수정함(안 제9조제1항)

다. “상품” 을 “제품” 으로 수정함.(안 제9조제2항)

- 수정이유 : 중복 사용된 용어를 정리하고, 뜻이 모호한 단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는 등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정책과

- 수정내용 : 안 제10조의 조문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으로 수정함.

- 수정이유 :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안전치수과

- 수정내용

가. 겨울철의 자연재난대책기간을 “12월 1일” 에서 “11월 15일” 로 함(안 제2조제4호)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추가 보완함.(안 제7조제1항)

다.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위원에 구의원을 추가함.(안 제32조제2항)

- 수정이유 :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우리 구의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설치·구성함에 있어 기존의 재해안전관리 관련 기관장 및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마을담당관

- 수정내용 : 제17조(구성) 4항 1호 중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한다.

- 수정이유 : 마을만들기 사업에 구의회 의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적경제과

- 수정내용 : 안 제18조 제3호를 “그 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때”로 수정한다.

- 수정이유 : 위원을 해촉할 사유 중에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해촉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적경제과

- 수정내용 : 안 제10조 제3호를 “그 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때”로 수정한다.

- 수정이유 :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해촉하고자 함.

IV. 기타사항

5분발언

○ 정형진 의원

- 일 시 : 2015. 10. 07(수) 제1차 본회의 시

- 내 용 : 의원연구단체(성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연구) 간담회 결과 보고

○ 이인순 의원

- 일 시 : 2015. 10. 15(목) 제2차 본회의 시

- 내 용 : 1인가구를 위한 소량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 필요성, 노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끝